

—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현재 운영중인 주차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시가 설치할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수탁관리를 추가하여 공단운영을 활성화하고 추후 체육 및 복지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명칭변경 :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 ⇒ 구미시시설관리공단
- 이사 수 조정 : 8인이내 ⇒ 9인이내
《상임이사(-1), 당연직이사(+1), 기타이사(+1)》
- 사업범위 추가(확대)
 - 공영주차시설 건설관리 및 운영(기존)
 - 불법 주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기존)
 -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수탁관리(추가)
 - 기타 자치단체 위탁 사업 및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추가)
-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강화
 - 추천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재적위원 2/3참석, 출석과반수 찬성
추천위원 결격사유, 실비변상 등 규정 신설
- 공무원의 파견 :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공단 정원의 1/10의 범위안에서 파견 또는 겸임

4. 참고사항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업무 편람
-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외 4

5.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97. 4. 19제정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구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로 개정하여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을 위탁 관리코자 하는 조례로서 전면 개정조례입니다.
- 지방공기업 실무 편람에 의한 조례표준(안)을 토대로 개정된 조례로서 기존 이사 수를 8인에서 업무관련한 이사 수를 늘려 9인으로 늘리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실비변상, 시장의 재추천 요구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로 확대하여 수탁할 수 있게 하며 공단정원의 1/10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가능케 하는 조례입니다.
- 본 조례개정 시행으로 발족되는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시의 여러 부서와 업무적 연관을 갖게 됩니다.(체육, 교통, 예산 등)
시설관리공단을 업무 감독할 일원화된 부서가 필요하오며
- 제7조(임원)는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를 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인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로
- 제9조(이사)①이사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한다는 이사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로 하여 공기업법 제58조의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규정토록 한 법의 취지와 추후 시설물 추가 위탁시와 관련하여 업무관련 당연직 비상임이사 추가 영입 등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